

서울사이버대학교 평의회 會議錄

(2020학년도 제2차)

회의소집통보일자		2020. 8. 6.	
의원정수	11	재적의원	10

1. 일시 : 2020년 8월 13일(목요일) 오후 2시

2. 장소 : 서울사이버대학교 B동 104호

3. 출석의원(9명) :

의 원 구 국 모, 의 원 남 상 규, 의 원 박 현 석,
 의 원 오 석 선, 의 원 이 재 웅, 의 원 이 향 아,
 의 원 정 오 영, 의 원 정 웅 용, 의 원 정 영 애,
 (가나다순)

4. 결석의원 : 이재원

5. 회의안건

- 1) 학칙 개정(안) 심의의 건
- 2) 기타안건

6. 회의진행

의장은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안건심의 :

의 장 : 제1호 안건인 학칙 개정(안) 자문과 관련하여 남상규 의원에게 설명을 요구하다.

남 상 규 의 원 : 제1호 안건인 학칙개정과 관련하여 학칙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하여 개정 사항을 설명하다

박 현 석 의 원 : 제37조(등록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COVID-19에 의한 실습과목 운영 및 국가장학금 사항 등을 추가설명 하다.

정오영 정웅용 오석선 이향아 정영애
 이재원 남상규 -1- 구국모 박현석

의 장 : 학칙개정 사항과 관련하여 의원들의 추가 의견을 묻다. 의원들의 추가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학칙 개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다.

정 응 용 의 원 : 학칙 개정(안)에 동의하다.

정 오 영 의 원 : 정응용 의원의 동의에 재청하다.

의 장 : 정응용 의원의 동의와 정오영 의원의 재청에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묻으니 만장일치로 동의에 찬성하다. 이에 학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선포하다.
기타 안건이 있는가를 묻다. 기타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2020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의 종료를 선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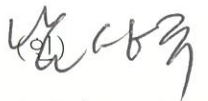
7. 폐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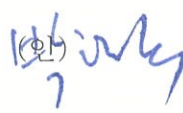
의장이 다른 기타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 하니 오후 2시 30분이 되다.

2020년 8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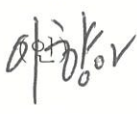
의 장 : 이 재 응 (인) 

의 원 : 구 국 모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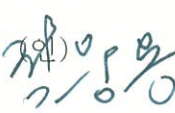
의 원 : 남 상 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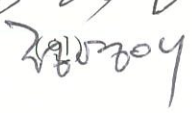
의 원 : 박 현 석 (인) 

의 원 : 오 석 선 (인) 

의 원 : 이 향 아 (인) 

의 원 : 정 오 영 (인) 

의 원 : 정 응 용 (인) 

의 원 : 정 영 애 (인) 

(가 나 다 순)

제1호 안. 학칙개정(안) 심의의 건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본 대학교는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융합형 인재 양성, 소통하고 협력하는 포용적 인재 양성, 문화적 소양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목적·목표) ① 본 대학교는 학교법인 신일학원의 건학정신에 따라 믿음, 봉사, 자주의 덕목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을 교육이념으로 한다. ② 본 대학교는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③ 본 대학교의 교육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융합형 인재 양성 2. 소통하고 협력하는 포용적 인재 양성 3. 문화적 소양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제8조(교직원의 구분) ①~② <생략> ③ 본 대학교의 <u>효율적인 교육을 위해</u> 전임교원 외에 <u>석좌교원, 초빙교원</u> , 특임교원, 객원교원, 대우교원, 겸임교원, 강사를 둘 수 있다. ④ <생략>	제8조(교직원의 구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본 대학교의 효율적인 교육 <u>및 학술 진흥을 위해</u> 전임교원 외에 <u>비전임교원 및 강사를</u> 둘 수 있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등록금의 반환) ① <생략> ②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학기 개시일 전에 입학포기를 한 경우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학기 개시일 <u>부터</u>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재학 중인 <u>자의 자퇴 또는 제적생</u> 의 등록금(신·편입생의 경우 입학금은 제외한다)의 <u>반환에 관해서는</u>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제37조(등록금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학기 개시일 전에 입학포기를 한 경우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학기 개시일 <u>이후</u>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재학 중인 <u>자가 자퇴하거나 제적될 경우</u> , 등록금(신·편입생의 경우 입학금은 제외한다) <u>반환은</u>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생략>	<현행과 같음>

정영웅
이재용

정오영
남상국

오수빈
정호민

이항아
정명어
박민지

현 행	개 정 (안)
④ 휴학하는 자의 등록금 반환에 관해서는 세칙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학기 개시일 이후 천 제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인하 여 학사일정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학기의 등록금 또는 해당과목의 수업료 를 반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등록금의 반환 및 휴학하 는 자의 등록금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 시행된 사항 은 이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2호 안. 기타안전

정양웅 정오영 조희선 이항아 조영아
이재웅 남상규 구국모 박연규